



과거의 잘못된 세금신고의 수정(자진신고제도)

질문

Z씨는 한국에 임대용 상가가 있는데 이로부터 매년 임대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Z씨는 캐나다 거주자로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그동안 해외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건물에 대한 해외자산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올바르지 못한 세금 신고를 되돌리기 위해서 Z씨는 최근 과거에 빠뜨린 소득 및 해외자산 신고를 수정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게 신고할 경우 발생할 불이익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Z씨가 과거의 잘못된 세금 신고를 수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검토

과거 연도의 잘못된 세금 신고를 수정할 때에는 수정신고서(T1 Adjustment Request)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하지만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과거의 잘못된 신고에 대한 벌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납세자는 과중한 벌금이 부과되는 과거

연도의 잘못된 세금신고에 대해서 수정 신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권장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벌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수정신고를 권장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자진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 progr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국세청에서는 과거의 미신고 또는 부정확한 세금신고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벌금 또는 법적 고발을 면제해줌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세금신고의 수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제도는 소득세, 법인세, GST/HST, Payroll 등 일반적인 세금신고의 수정은 물론이고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해외자산신고(T1135), 해외법인신고(T1134), 보유자산신고(T1161) 등을 과거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과거의 미신고 또는 부정확한 세금신고에 대하여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신고가 유효한 자진신고(Valid disclosure)인지를 검토하고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동 신고를 승인합니다. 이때 국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자진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발적일 것(Be Voluntary)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신고 또는 세무감사에 대한 통지가 오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과거 세금신고에 대한 조사 등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잘못된 신고를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수정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서둘러 수정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2) 완전할 것(Be Complete)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내용이 정확하고 빠짐없어야 합니다. 자진신고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신고를 수정하는 것인데 자진신고시에도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거나 누락한다면 이는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것이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의성이 없는 단

순한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자진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일 것(May involve a Penalty)

납세자가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벌금을 면제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벌금이 발생하지 않는 신고, 예를 들면 환급이 발생하는 수정신고 등은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세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1년 이상 경과할 것(One year past due)

과거 세금신고의 법적 신고 기간으로부터 1년 후부터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해외자산신고 누락에 대하여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받기 위해서는 2015년 해외자산 신고 기간인 2016년 4월 말 또는 6월 15일(사업 소득자의 경우) 이후로 1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5월 1일 또는 6월 16일 이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한 이유는 납세자들이 자진신고제도를 남용하여 세금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1년이 지나지 않은 수정신고를 1년이 지난 다른 연도와 함께 신고할 때에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고분을 전체 자진신고의 일부로 간주하므로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Z씨가 과거 세금신고시 빠뜨린 임대소득과 해외자산신고에 대한 수정을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벌금 등의 불이익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자진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국세청에서 미신고 내용을 알기 전에 둘째, 신고내용을 빠짐없이 셋째,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넷째, 최초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제도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발간한 지침서(IC00-1R4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에서는 문장 곳곳에서 encourage, benefit, protection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진신고제도가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잘못 세금 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정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